

금융소득자 신고



1 기본사항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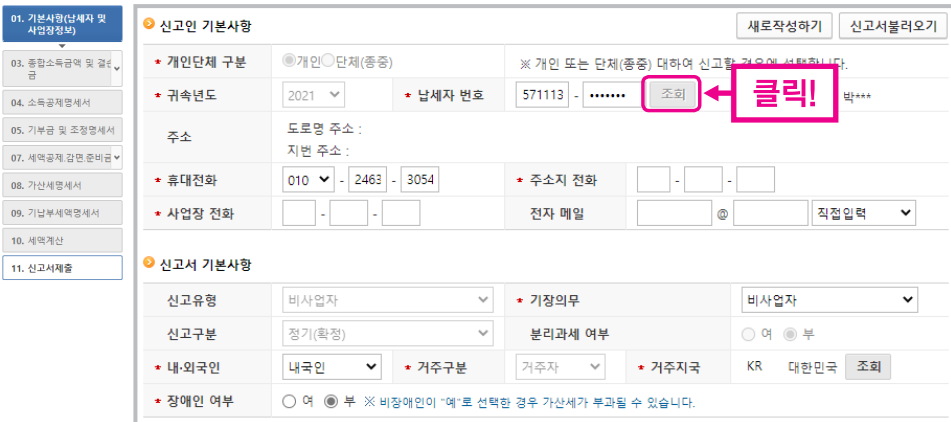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1년에 발생한 금융소득 명세를 금융회사 등에 확인해 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납세자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2021년도 귀속분) ✕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명세서가 조회됩니다.
 ※ 아래 화면의 정보는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금융 자료는 4월 초까지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배당소득

구분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① 종합과세 이자소득				
② 종합과세 배당소득				
③ 종합과세 대상금액(①+②)				

· 이자·배당소득 명세서(지급자별, 계좌별, 배당가산액 대상별(배당일 경우) 합계) 엑셀로 내려받기

※ 배당가산액 대상은 'G' 로 표시됩니다.

소득종류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번호	배당가산액 대상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이자·배당소득 건별 상세내역

소득종류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번호	배당가산액 대상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클릭!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
 클릭!

화면을 이동하면 금융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 제출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자별, 계좌별, 배당가산액별로 구분 되어 나타납니다.
- 상세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직접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배당소득 명세서 동영상(이자·배당소득 명세서) [화면도움말](#) [도움말](#)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 납세자 본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해야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구분	그 밖의 이자소득 13		
소득의 지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확인 ← 클릭!
• ③ 배당액	0 원		
• ⑥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0 원	배당가산액 가산액 (⑥×가산율)	0 원
• 이자·배당 소득금액	30,000,000 원	•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4,200,000 원

※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배당가산액 가산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계산 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 ← **클릭!**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
04. 소득구분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감면 공제·로비료명세서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이자·배당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의 사례로 입력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 항목에서 해당되는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 이자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자·배당 소득금액 항목에 지급자 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지급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입력내용이 추가 됩니다.

이자·배당소득 명세서 동영상(이자·배당소득 명세서) [화면도움말](#) [도움말](#)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 납세자 본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해야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구분	배당가산 (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소득의 지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확인 ← 클릭!
• ③ 배당액	20,000,000 원		
• ⑥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0 원	배당가산액 가산액 (⑥×가산율)	0 원
• 이자·배당 소득금액	20,000,000 원	•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2,800,000 원

※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배당가산액 가산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계산 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 ← **클릭!**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소득구분	소득의 지급자		③ 배당액	배당가산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원천징수된 소득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⑥ 대상금액	가산액 (⑥×가산율)		
☐	13	주식회사	0	0	0	30,000,000	4,200,00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클릭!**

- 추가로 입력할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 먼저 소득구분 항목에서 해당되는 배당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배당지급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배당액 항목에 지급자 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 배당가산액 대상금액과 배당가산액 가산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계산 해줍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입력내용이 추가 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손금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3 소득공제명세서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08. 가산세명세서

09. 가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④ 소득공제명세서

⑤ 소득공제(소득세법)

▶ 인적공제 등록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관계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2016년 귀속 부터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화면에서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로 체크하여 등록하면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는 보고서 출력시 최대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NO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현
<input type="checkbox"/>	1	*****-*****	박****	소득자 본인	Y	N	N	N	

▶ 인적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명	8. 인적공제 계	1,500,000

다음은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 합니다.
-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등록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됩니다.

118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1. 국민연금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5. 특별공제_주택자금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12. 기타연금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6. 특별공제_기부금(이월분)	0
1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7. 특별공제_계(16)	0
14. 특별공제_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2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25.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0. 주택마련저축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22. 신용카드 등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2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7. 계(18+ ~ +26)	0

○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초과액

28. 소득공제 합계(8+11+12+13+17+27)	1,500,000	2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15+19~23+26-2,50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	-----------	---	---

이전 ← **클릭!**

-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화면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각각의 항목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금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 08. 가산세명세서
- 09. 가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기부금명세서란?

· 원장중수취무지(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본의 기부금명세서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회사에서 공백 제출하거나 누락 제출 또는 제출 이후 변동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기부내역] 및 [이월분 기부내역]에서 입력할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당해연도 기부내역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부유형	건수	기부금액	공제대상금액	기부장려금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월분 기부내역

기부연도	기부유형	기부금액	연도까지 공제잔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 공제받지못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클릭!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적용 입력하기**

다음은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 해당되는 내역이 있는 경우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동영상(기부금 명세서)] [화면도움말] [도움말]

※ 원장중수취무지(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본의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하려면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 단계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어도 기부금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으로써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추가입력 해야 합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선택내용 입력/수정

<input type="checkbox"/>	공제구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주요종코드
	세액(소득) 필요경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_*****	박***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_***** 성명: 박***

• 유형코드: -전제-

기부내용: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선택 기부자 성명: 기부자 관계: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 기부처 상호:

• 기부내역 건수: 기부내역 합계금액:

•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기부금:

등록하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코드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합계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 해당연도 기부내역

주인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부자		기부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부유형	건수	기부금액	공제대상금액	기부장려금
571113-*****	박만영	수탁자 본인	203-02-00639	BL자사	법정기부금	1	100,000	10,000	90,000

클릭!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유형코드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금액 등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삭제도 가능합니다.
-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인등록번호 ***** 성명 박***

·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

기부유형	소유세법 제34조제2	기부연도	2021
13. 기부금 합계금액	100,000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1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90,000	16. 기타 기부금	0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7. 해당연도 필요경비	0
18. 공제대상금액(14-17)	10,000	18.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10,000

[등록하기] [취소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14. 기부금액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8. 공제대상금액 (14-17)	해당연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않는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1	10	2021	10,000	0	10,000	0	0	0	0	10,000

- 기부금 명세 목록에서 이월하고자 하는 기부금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합니다.
-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 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명세서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등영상(금융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금융소득이 있는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비영업대금이익	0	6	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20,000,000
2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0	7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0
3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0	8	위 6·7 외의 배당소득	0
4	위 1·2·3 외의 이자소득	30,000,000	9	배당소득 합계(6 + 7 + 8)	20,000,000
5	이자소득합계(1+2+3+4)	30,000,000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 이자, 배당소득명세서 등에서 입력한 내용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0	금융소득금액(5+9)	50,000,000	32	[(2+7) × (14/100,15/100)]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11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33	[3 × (25/100)]	
12	기준초과금액(10-11)	30,000,000	34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13	배당가산액	2,200,000	35	소득공제	
14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0	36	과세표준(34-35)	
15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12)+(13)+(14)]	32,200,000	37	기본세율(%)	
16	소득공제	1,500,000	38	산출세액	
17	과세표준(15-16)	30,700,000	39	종합소득산출세액(32+33+38)	
18	기본세율(%)	15.00			
19	산출세액	3,525,000			
20	[11 × (14/100)]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2,800,000			
21	비교산출세액 계(19 + 20)	6,325,000			
22	비영업대금이익(1+3) × 25/100	0			
23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0-(1+3))	50,000,000			
24	[23 × (14/100)]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7,000,000			
25	금융소득외의 다른종합소득(14)	0			
26	소득공제	1,500,000			

- 20번 항목 란에는 11번 항목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합니다.
- 자세한 계산법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24번 항목 란에는 23번 항목의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합니다.
- 자세한 계산법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동영상(세액감면·공제 준비금)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도움말 (단위: 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7,000,000)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7,000,000)을 제외한 공제기준산출세액(0) 범위내에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녀세액공제의 세액공제는 고정된 금액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초과 가능합니다.

구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조세조약(원어인교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text"/>	
합계	0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감면·공제·준비금 명세서

세액감면·공제·준비금 명세서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세액공제명세서 (단위: 원)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되며, 입력한 특별세액공제가 작아도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자녀세액기본공제 도움말	0 명		0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text"/> 명		0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동계산	0		0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자동계산	0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0		0	
의료비 자동계산	0		0	
교육비 자동계산	0		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도움말	110,000		22,00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소득세법상 인별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각 세액공제별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항목	구분	지출금액
① 과학기술인공제	☑ 50세 이상	<input type="text" value="0"/>
② 퇴직연금		<input type="text" value="0"/>
③ 연금저축		<input type="text" value="0"/>
④ 소계(① + ② + ③)		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항목	지출금액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계좌	<input type="text" value="0"/>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	<input type="text" value="0"/>
ISA계좌 관련 공제대상금액	0

1 클릭! → → ← 2 클릭!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자동계산] 버튼을 이용하여 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단위: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0	
전자신고 이월 세액공제			<input type="text"/>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20,000"/>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준비금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 연도	손금산입 금액	당기환입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하며, 각 세액공제별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가산세명세서

가산세명세서 동영상(가산세 명세서) 도움말

금액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52,200,000	산출세액	7,000,000
--------	------------	------	-----------

사업장 정보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수입금액
---------	----	------

무신고 가산세 감면 계산기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무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20/100	0
일반무신고	수입금액	0	7/10,000	0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계산기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10/100	0
부당감면·공제	공제세액	0	40/100	0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08. 가산세명세서
09. 가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기납부세액명세서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기납부세액명세서
등영상(기납부세액 명세서) 화면도움말

-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근로소득(8)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자감 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이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2-가-5.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2-나.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 2-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메뉴의 원천징수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에납세액	<input type="text" value="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수시부과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4,200,000	
배당소득	2,800,000	
사업소득	0	0
근로소득	0	0
연금소득	0	
기타소득	0	
합계	7,000,000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기납부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세액계산

9. 세액의 계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 금융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의 세율은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19 52,200,000	
소득공제	20 1,500,000	
과세표준(19-20)	21 50,700,000	41 <input type="text" value="0"/>
세율(%)	22 0.00	42 <input type="text" value="0.00"/>
산출세액	23 7,000,000	43 0
세액감면	24 0	
세액공제	25 20,000	
종합과세(23-24-25)	26 6,980,000	44 0
결정세액	27 0	45 0
분리과세소득	27 0	45 0
합계(26+27)	28 6,980,000	46 0
가산세	29 0	47 <input type="text" value="0"/>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input type="text" value="0"/>	48 <input type="text" value="0"/>
합계(28+29+30)	31 6,980,000	49 0
기납부세액	32 7,000,000	50 0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33 -20,000	51 0
납부특례세액자감	34 0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명세서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체크!**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9. 환급금 계좌신고

·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CMA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 검토후 6월말~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 홈텍스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조회 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 후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클릭!**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 본인 실명으로 계좌 등록된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신고서 제출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동영상(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신고서 제출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박*** (571113-*****)	
귀속년도	2021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52,200,000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50,700,000	0
산출세액	7,000,00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20,000	0
납부특례세액자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20,000	0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광주은행	계좌번호	1212313
------	------	------	---------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개인정보 제공동의

※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위탁수)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 **체크!**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클릭!**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k****	사용자명	박****
접수번호	227-2022-*****	접수일시	2022-04-21 10:51:19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역

상호(성명)	박****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0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달장소 (변경)신고 닫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20,000	납부내역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납부내역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20,000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국세가 결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결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 위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권익24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

체크! 확인하였습니다.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달장소 (변경)신고 닫기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 목록

· [납부할금액(원)]은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지방소득세 금액은 불포함)
 · 납부할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의 납부서버튼 클릭시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또는 서울시 ETAX)로 자동 연계되어 납부서 출력 (연계 지연시 재접속 시도)
 ※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전자번호조회납부, CD/ATM,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은행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 (07:00~22:00)

주민등록번호	●●●●●●-●●●●●●	[F]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성명	****	서울시 ETAX : 02-3151-3900 (평일 9~18시)
접수일시	2022-05-16 11:24:03	WETAX: 110번 (월~금 9~21시 토 9~13시)

※ 팝업창이 안 뜰 경우, [도구-팝업차단하기] 설정 필요

과세연월	납부할금액(원)	납부기한	납부서	지방소득세
	-20,000	2022-05-31		

-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제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납부서유)>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 항목에서 Y로 조회됩니다.

· 상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화면을 통해 부속·증빙서류 상세내역 확인 및 추가 제출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권내역 조회**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화면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년 1월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버튼 이용)
개인지방소득세 변경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결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완납됩니다.

· <납부여부> 항목은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제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한 세액(납부증 추가 납부서 포함)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 됨

· 납부한 이후 납부결과 변경에는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신고서 재등록**

신고일자: 2022-03-22 | 2022-04-21 |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정보 공개여부: 예 아니오 ※ 정보 공개 대상: [] 신고내역의 상세(상영) 항목 [] 접수증의 상세(상영),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서번호)	접수여부 (납부서유)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2021년1월	종합소득	장기...	장기신고	박**	●●●●●●-●●●●●●	인터넷...	2022-04-...	227,202	작성(있음)	보기	보기	Y***	N		신고이동

1 / 총 1건(1기)

- [신고내역조회(접수증)]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